

[국회 토론회]

유통업 의무휴업, 폐지가 아니라 확대권!

윤석열 정부의 마트 의무휴업 폐지시도 문제점과 대안

2022년 9월 23일 (금)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1

주 최 |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동주·진성준,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

주 관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인사말

강규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02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04
배진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06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08

발 제

발 제1 대형마트 정기의무휴업제도 한계와 과제 검토 _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사)유니온센터 이사장	12
발 제2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과 노동자 건강 _이혜은 직업환경의학전문의 / 한림대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부교수	32

토 론

토론1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44
토론2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위원장	52
토론3 김복철 재벌복합쇼핑입점저지전국비대위 공동대표 / 한국패션리폼중앙회 대표	58
토론4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62
토론5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64

인사말



강규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얼마 전 윤석열 정부는 마트노동자에게 너무도 소중한 의무휴업일을 TOP10 투표나 규제심판회의나 하는 온갖 방식으로 없애기 위해 애쓰다, 끝내는 유통노동자와 시민사회, 진보정당의 저항에 한발 물러선 바 있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정부는 '덩어리 규제'를 없애겠다고 말하며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는 온갖 규제들에 칼날을 들이밀려고 호시탐탐 간을 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유통노동자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휴식권이 필요합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은 바로 의무휴업 확대입니다. 유통자본의 욕심으로 유통업 노동자는 남들 쉴 때 쉬지 못하고, 오히려 남들이 쉬는 주말이나 명절에는 연장영업을 해야 합니다. 아울렛을 비롯한 복합쇼핑몰들은 365일 영업을 기본으로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들도 모두 365일 일해야만 합니다. 백화점은 IMF 경제위기가 지나가면 1주 1회 주휴제로 복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물론이거니와, 365일 돌아가는 매장 때문에 쉬는 날에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언제 매장에서 전화가 와서 온갖 문의가 시작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라인유통업은 현행법이 야간노동도 영업일도 규제하지 못해, 배송기사나 피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대로 쉬지 못하는 노동자는 제대로 일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유통노동자에게는 의무휴업이 필요합니다.

지난 의무휴업 폐지 문제에 대응하면서 수많은 마트노동자들이 의무휴업이 자신에게 어

면 의미인지 외쳤습니다. 의무휴업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한 작은 숨구멍이었고,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게 해 준 귀한 시간이었고, 노동자를 단지 일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해 준 소중한 규칙이었습니다.

마트노동자 뿐만 아니라 모든 유통노동자에게는 사람다운 삶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매장이 통째로 쉬는 휴일이 있어야만 노동자는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히 쉴 수 있습니다. 남들이 쉴 때 쉬어야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는 유통노동자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유통업 의무휴업의 확대를 위한 입법 기반을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2022년 9월 23일
서비스연맹 위원장 강규혁



이동주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 민생부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 민생부대표 이동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문제점 및 대안 마련 국회 토론회의 개최를 환영합니다. 의무휴업 제도의 필요성을 되짚고, 제도의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 진성준 의원님과 배진교 의원님,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과 서비스연맹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발제를 받아주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님, 이해은 한림대 의대 교수님과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오랜 시간에 걸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2012년, 전국 각지에서 상생 조례안을 공포하며 시작되어, 대기업의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2015년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정당성을 입증받았습니다.

효과도 뛰어났습니다. 산업부가 2017년 작성한 ‘소비자의 소비행태 조사를 통한 유통업

체 영업출점제한 제도효과 분석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50%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의무휴업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인의 생존권,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제도를 확대하기는커녕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국민제안에 올려두고,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정부의 민낯을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제도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뜻깊은 토론회의 진행을 위해 자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서 의무휴업 제도의 개선 방안과 확대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해 의무휴업제도가 폐지의 위협에서 벗어나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원내 민생부대표 이동주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지난 8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 방문해서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출연하는 등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소상공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규제심판회의는 2차 회의를 무기한 연기했고, 규제심판 과제 재검토, 홈페이지 리뉴얼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은 마치 곡소리라도 내듯이,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멈추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아무런 논의 없이 국민제안 온라인투표에 부친 전력이 있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기술적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잠시 후퇴했다가, 지난달에 규제심판회의 1호 안건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잠시 물러났지만, 머지않아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지난 세 달여 간의 추진 경과만 보더라도, 이 정책이 얼마나 준비 안 된 정책인지, 윤석열 정부가 이 정책을 얼마나 잘 모르고,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심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반드시 막아 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시장 기능에 대한 왜곡된 믿음이나, 극단적인 능력주의 사고방식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온라인상에는 대형 쇼핑몰의 입점을 반대하고, 규제를 주장하는 영세 중소기업들과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으로 신체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지키기 어려운 노동자에 대한 혐오정서가 만연합니다. 편리함에 익숙해진 많은 이들이 대형마트 접근성 향상을 바라는 것도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단편적인 인식도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휴업 수호든, 확대든, 이러한 인식과 정서를 바꾸어 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존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와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를 '소비자 편익'만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가기 위해, 인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막고, 정당한 규제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공동행동 제 단체와 관계자 여러분과 참가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관련 실무 등 준비에 애써주시는 스태프 여러분께 더 큰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국회의원 배진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국회의원 진성준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문제점 및 대안 마련 국회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유통산업발전법 ‘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만들어진 과정과 이에 대한 시사점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주제로 토론을 합니다. ‘현행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해주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님과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과 노동자 건강영향’을 분석해주실 이해은 한림대 의대 교수님의 발제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증언해주실 토론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고, 마트 노동자의 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많은 논의를 거쳐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거쳐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도입했고, 2013년에는 규

제가 확대돼 월 2회 휴일 의무휴업이 강제됐습니다.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일요일 휴업 폐지 추진은 재벌 대기업이 원하는 첫 번째 민원이자,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결정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생존권과 노동자의 건강권보다 대기업의 이익이 우선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대형마트 규제를 통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면서, 새로운 시장환경 속에서 발전 방향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9.23.

국회의원 진성준

발 제 문

대형마트 정기 의무휴업제도 한계와 과제 검토 - 국내외 현황과 법제도, 정책적 과제 검토 -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사)유니온센터 이사장 -

I. 제도의 시작

□ 대형마트 정기 의무휴점제 시행

- 지난 25년전 유통업 대형마트 영업 일(매월 2회 정기 휴점)과 영업시간 규제(24시 이내 영업점 폐점)가 사회적으로 논의되면서, 다양한 영업시간 문제가 입법(19대~21대 국회)과 법률(대법원, 헌법재판소 판결)로 논의되었음.
- 서비스연맹과 유통상공인 단체와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 정기 의무휴점제 관련 토론회만도 벌써 4회(2012.10, 2016.12, 2018.11, 2022.9)나 되는 상황임. 그간 민주당 정부 시기에는 정부가 현행 법률 유지나 일부 개선 정도였다가 보수정부 시기에는 매번 정기휴점 폐지, 축소 혹은 변경 등을 밝히고 있음.
- 대형마트 의무휴점제는 2012년 도입되었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매장 면적이 3천㎡ 넘는 대규모 점포부터 적용되었음. 초기 법안에는 월 한두 차례 휴점으로 시작했으나, 2013년 법이 개정되면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월 두 차례 의무휴업일이 정착되었음.¹⁾

1) 백화점은 지난 1997년 IMF직후 업체들간의 과당경쟁으로 주1회 시행하던 정기휴점제를 축소해 현재 월 1회로 바뀌었으며 폐점시간도 이 전엔 오후 7시 30분에서 현재는 주중에 오후 8시, 주말에는 오후 8시 30분으로 연장됐다. 면세점 역시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업체들간의 경쟁으로 인해 이전의 오후 7시 폐점에서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한 과 오후 9시로 연장 영업을 하기도 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의무휴업일을 주말과 평일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평일에 휴점하는 매장도 있음.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만 법률을 적용받고 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편의점·면세점 등은 제외되었음. 게다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농수산물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 제외된 한계도 존재함.

□ 대형마트 정기 의무휴점제 입법 취지와 판결

-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중소기업의 골목상권과 생존(참여연대, 한상총련 등), 그리고 대형마트 종사자의 건강권 차원(서비스연맹)에서 논의되었고,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법 취지 필요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바 있음.²⁾

2015년 11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 판결

- 가. 시기 : 2015두295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결정
- 나. 내용 :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 관련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행정처분 취소 원심 파기 결정.
- 다. 취지 :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 등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 아니라 보호하여야할 필요성도 크다.”

- 당시 대법원은 “대형마트 등이 소규모 지역상권에까지 무차별 진출해 시장을 잠식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위축과 대형마트 소속 근로자의 일상적인 야근근무 등 부정적인 효과가 일어났으며, 이런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유통법은 헌법 119조 제2항에 정한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 등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 아니라 보호하여야할 필요성도 크다.”고 판단한 것.

- 그간 두 차례 제기된 법률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같은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한바 있음. ‘골목상권과의 상생 발전’이라는 공익을 증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의미가 더 크다는 취지였음.³⁾

- 사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진입규제’(특정 산업에 새로 참여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기존 산업과 해당 산업에

2)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seqnum=5035&gubun=4>

- 3) 2013년 12월 2일 **헌법재판소**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가 대형마트를 차별 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한바 있음.

참여하려는 잠재적 기업 사이의 경쟁을 제약하는 경제적 규제)와 ‘행위규제’ 수단의 하나임. 행위규제 수단으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제도(제12조의2)를 법률에 녹아들게 한 것임.

- 한편 2017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사후 입법적 평가 자료에서도 확인됨. 보고서는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미친 단기·중장기적 효과나 준대규모 점포의 신규 입점 효과성도 있다”고도 적시하고 있음.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점포별·일별 매출액이 규제 이전 시점인 2011년에 견줘 조사 시점(2014년과 2015년)에 32~36%가량 증가.

- 다른 한편으로 지난 2018년 시민사회단체와 중소기업 및 민생경제 관련 단체들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점포의 규제 필요성’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2018.9.17., 참여연대)한바 있음. 각 단체들은 중소기업의 생존 침해와 골목상권 파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에, 대규모점포의 규제(전통상인 보존구역, 영업시간)가 있으니 현실에서 그 한계가 있기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바도 있음.⁵⁾

2. 제도의 퇴행

□ 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정기 의무휴점 폐지 추진

-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형마트 정기 의무휴업 폐지’를 졸속 추진하다가 결국 중단했음.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없던 사안인데, 2022년 7월 갑자기 등장했음.
- 정부는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시행했고 ‘국민제안’에 접수된 1만2천여 건의 민원 가운데 대형마트 정기 의무휴점이 안건으로 선정되었음. 국민제안 형식을 띠긴 했지만 추진 과정이나 배경에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음.
-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규제심판회의’ 첫 안건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선정했고, 이는 소상공인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자 지난 2022년 8월25일 한발 물러

4) 대형마트 영업시간 보완과제는 국회입법조사처 발간 <이슈와 논점>(2012.7.23.),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대법원 판결 의미와 과제는 <이슈와 논점>(2015.12.8) 참조할 것.

5) 유통 소매업 노동자 규모는 51만3천명(2019년 기준)이며, 가장 큰 특징은 고용 불안정성과 취약성이며, 이 취약성은 소매업은 2019년 전산업 상용(69.5%), 임시(23.5%), 일용(6.9%) 비율과 달리, 소매업은 상용(58.3%), 임시(36.6%), 일용(5.1%) 순서로 기간이 없는 고용(즉,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 게다가 유통업은 서비스산업 특성상 여성(60.7%) 비중이 많고, 여성 고령화 인력 증가 현상이 확인되고, 청년 비중은 15% 내외 정도임.

나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대형 마트 의무휴업제도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간과 하면 안 됨.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의무적으로 월 2회 쉬어야 하는 의무휴업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3.7%로, 가장 많았음. 이는 '폐지해야 한다'(응답률 33.4%)와 비교해서도 배 가까이 높은 수치임.⁶⁾

□ 정부의 대형마트 정기 의무휴점제 변화 필요성

- 국내 유통 소매업 영역에서는 영업시간과 휴점제도 등과 관련하여 이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특히 유통업 양태가 기존과는 다르게 쇼핑몰이나 드럭스토어, 온라인 플랫폼 등의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특히 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당시 기준 대규모점포 유형이 6개 정도였는데, 2022년 현재 시점에서 보면 산업구조 흐름이나 유통업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공항 면세점 물품 온라인 구매 시범 사업(2023)

공항 면세점 물품도 온라인 구매한다

**정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귀국길 면세품 수령도 확대**

앞으로 공항 내 출·입국장 면세점의 면세품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해외여행 중 들고 다니지 않고 한국에 입국할 때 찾는 입국장 인도장도 확대 도입한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면세 산업 활성화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먼저 출·입국장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시내 면세점만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다. 올해 말 한국공항공사 시설에 입점한 면세점부터 시행하고, 인천공항공사 내 면세점과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면세점에서 산 면세품을 출국장 인도장에서 찾아 해외 체류 기간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겠다는 목적에서다. 내년 상반기 부산항에서 시범 운영하고, 인천·김포공항 등에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시내 면세점에서 온라인으로 위스키 등 면세 주류를 구매해 공항과 항만 출국장 인도장에서 찾는 것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 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살 수 있게 허용한다. 시내 및 출·입국장 면세점의 면세품을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오픈마켓과 메타버스(가상공간)에서 판매하는 것도 허용한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자료 : 한겨레 신문(2022.9.15.)

- 실제로 주요 유통업체가 '365일, 24시간 영업 없는 편의점'(가맹점주 위한 편의점) 표방을 시작한 것이 대표적 변화임. 더불어 다양한 무점포, 온라인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디지털, 자동화 흐름과 맞물려 2023년부터는 면세점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구매가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이제는 사회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6) 2022년 9월 13일 헤럴드경제가 국회의장실과 공동으로 한국갤럽 의뢰 '추석민심 여론조사'(2022.9월5일-7일, 18세 이상 남녀, 1,506명, 유무선 전화인터뷰 조사, 표본오차: ±2.5%포인트(95% 신뢰 수준))

- 유럽의 다수의 나라들에서도 유통(소매)이나 상점 관련 영업시간 규제들이 존재하고 있음. 물론 유럽연합 주요 국가들에서도 영업시간 규제가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정책의 큰 흐름과 원칙은 유지하고 있음.
- 이에 이 글은 국내 대규모 점포의 정기의무휴점제와 영업시간 규제(명절, 공휴일, 심야 등) 및 온라인 유통 배송 운송과 같은 현재적 사안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3. 제도의 재검토

□ 유통업 정기 의무휴점 제도의 재설계 필요성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 분류(2017년 제10차 개정)에서 유통업(retail)은 전통적인 제품 '도소매업'에 국한하여 정의하고 있음.⁷⁾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른 대형마트의무휴점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G 도소매업'(45~47: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중 대형마트(47112)에 해당됨.
- 유통업 정의와 범위는 크게 '협의'와 '광의'의 관점에서 구분됨. 협의의 유통업은 제품의 유통에 관여하는 전통적인 도소매업에 해당됨(유통산업발전법 2조 규정). 광의의 유통업은 제품뿐 아니라 서비스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음.

분류 코드	주요 업종	분류 코드	주요 업종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471	종합 소매업	4761	서적 및 문구용품 소매업
4711	대형 종합 소매업	47611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47111	백화점	47612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47112	대형 마트	4762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47119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47620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4712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4763	운동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47121	슈퍼마켓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47122	체인화 편의점	4763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47129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4764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4713	면세점	476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47130	면세점	477	연료 소매업
4719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4771	운송장비용 연료 소매업
47190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47711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47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47712	운송장비용 가스 충전업
4721	식료품 소매업	4772	가정용 연료 소매업
47211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47721	가정용 고체연료 소매업
47212	육류 소매업	47722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47213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47723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47214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소매업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7) 유통업은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 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함.

분류 코드	주요 업종	분류 코드	주요 업종
47215	채소, 과일 및 뿌리작물 소매업	4781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47216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47217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47812	의료용 기구 소매업
47218	조리 반찬류 소매업	47813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47219	기타 식료품 소매업	4782	사무용 기기, 안경, 사진장비 및 정밀기기 소매업
4722	음료 및 담배 소매업	47821	사무용 기기 소매업
47221	음료 소매업	47822	안경 및 렌즈 소매업
47222	담배 소매업	47823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473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47829	기타 광학 및 정밀 기기 소매업
473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기 소매업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4731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47312	통신기기 소매업	4784	예술품, 기념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4732	가전제품 소매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320	가전제품 소매업	47842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4785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4741	의복 소매업	47851	화초 및 식물 소매업
47411	남자용 겹옷 소매업	47852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47412	여자용 겹옷 소매업	4785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47413	속옷 및 잠옷 소매업	4786	중고 상품 소매업
47414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47861	중고 가구 소매업
47415	한복 소매업	47862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47416	가죽 및 모피의복 소매업	47869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
47417	유아용 의류 소매업	479	무점포 소매업
47419	기타 의복 소매업	4791	통신 판매업
4742	섬유, 직물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47421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47422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47919	기타 통신 판매업
47429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4792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4743	신발 소매업	47920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47430	신발 소매업	4799	기타 무점포 소매업
4744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47991	자동판매기 운영업
4744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47992	계약배달 판매업
475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47993	방문 판매업
4751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47999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47511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47512	공구 소매업		
47513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47519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4752	가구 소매업		
47520	가구 소매업		
4759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47591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47592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47593	약기 소매업		
475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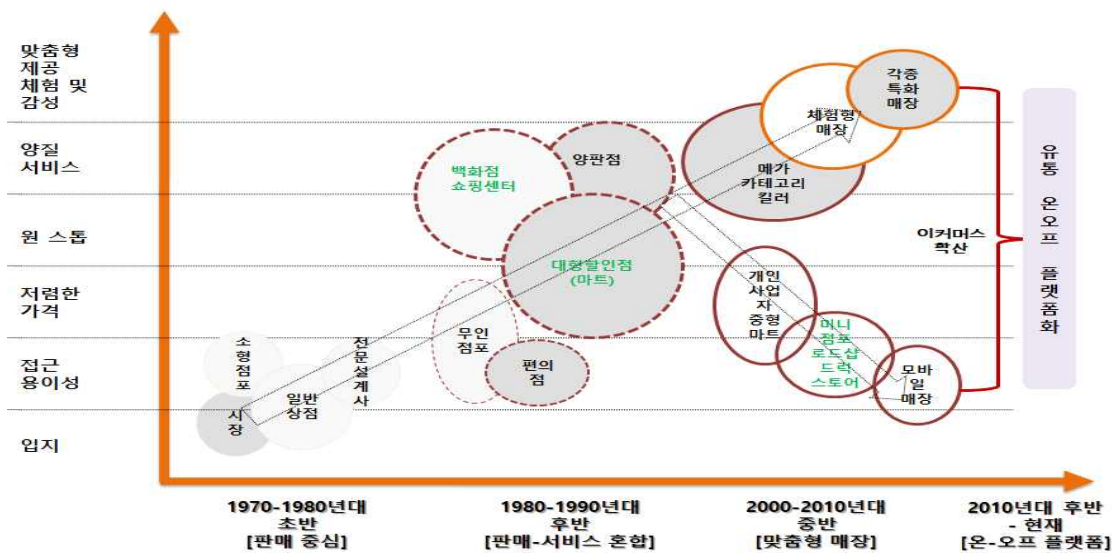
○ 유통업은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시기별로 다양한 변화 양태를 확인할 수 있음. 1990년대 유통시장 개방과 국내외 초국적 자본과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로 유통업체 지각변동이 시작됨. 지난 1997년 유통산업 개방 이후 국내 유통업은 규모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음. 또한 IMF 구제금융 이후 국내 유통업은 대기업 중심의 몇몇 유통업체로 구조조정을 겪었음.

- 초기에 규모의 경제 중심과 저렴한 가격, 접근성 중심에서 서비스 질과 원스톱 서비스

중심 그리고 맞춤형 형태로 변화했음. 그러나 최근 10년 사이 전자상거래가 확대되고, ICT 기술과 융합(핀테크)되면서 산업의 생산과전 전반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온-오프 유통 채널의 통합화나 물류 통합 현상이 대표적임.

- * 과거 : SSM 소규모 유통체인(스토어) 사업 진출과 드럭 스토어 진출
- * 최근 : 네이버, 쿠팡 전자상거래 진출 자사 브랜드 제품(Private label)

[그림1] 국내 유통산업 변화 흐름(1970년대~2020년대)



- 유통업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 업체별로 각기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오프라인 유통은 재벌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중소유통기업은 그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음. 온라인 유통은 시장 규모가 나날이 성장하고 있고 코로나19로 가속화됨.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온라인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오프라인 대형유통기업도 시장 진입을 위해 노력 중(영업일 규제 해제에 노력). 중소유통기업은 온라인 유통으로의 전환은 더딘 상황임(정수정, 2022).⁸⁾
- 대표적으로 ‘롯데’와 ‘신세계·이마트’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편의점, 면세점, 온라인쇼핑몰에 물류센터까지 모두 갖추고 있음. 홈플러스, 현대, GS리테일, 비지오프리테일 등의 대형유통업체들도 오프라인 매장과 물류센터 구축을 통한 온라인 시장의 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8) 중소벤처기업연구원(정수정 연구위원) 토론회 토론문 재인용.

[표1] 유통 대기업 온라인·오프라인 소매업태 현황

	롯데	신세계·이마트	홈플러스	현대	GS리테일	비지에프리테일
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	백화점	-	-
대형마트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	-	-
슈퍼	롯데슈퍼, 씨에스유통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	GS슈퍼	-
온라인쇼핑몰	우리홈쇼핑, 롯데닷컴	신세계몰, 에스에스지닷컴	홈플러스 온라인몰	현대홈쇼핑	GS홈쇼핑, 지에스프레쉬몰	-
편의점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이마트24	-	-	GS25	CU편의점
면세점	롯데 면세점	신세계 면세점	-	현대 면세점	-	-
물류센터	○	○	○	○	○	○

○ 유통 하위 업체별 판매액 지수 변화(2010년, 2019년) 순위를 보면 상위 순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음. 소매업 대형화의 주요 특징은 유통·제조가 결합된 수직결합기업화와 함께 오프라인·온라인 소매점과 물류센터까지 결합한 유통 대기업의 집중화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

- 이처럼 오프라인 유통시장에 집중해 있던 유통업체들이, 온라인 유통시장으로 경쟁적으로 진입하며 물류센터 구축을 통해 배송시장까지 결합시키고 있는 것은 세계유통기업 전략과 같이 옴니채널 전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임.

[표2] 유통 소매업태별 판매액지수 순위(경상지수 기준, 2015=100)

	2010년	2013년	2016년	2019년	2020년 8월
1위	전문소매점 (98.4)	방문 및 배달소매점 (107.7)	면세점 (133.5)	면세점 (270.2)	인터넷쇼핑 (297.5)
2위	방문 및 배달소매점 (96.0)	대형마트 (103.4)	인터넷쇼핑 (124.1)	인터넷쇼핑 (212.9)	면세점 (188.4)
3위	대형마트 (92.4)	백화점 (103.0)	편의점 (118.4)	편의점 (156.1)	편의점 (175.9)
4위	일반슈퍼마켓 및 잡화점 (89.2)	전문소매점 (100.9)	홈쇼핑 (110.7)	홈쇼핑 (133.0)	체인슈퍼마켓/홈쇼핑 (132.0)
5위	백화점 (85.4)	일반슈퍼마켓 및 잡화점 (96.7)	체인슈퍼마켓 (103.4)	체인슈퍼마켓 (115.9)	대형마트 (110.2)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2] 국가의 주요 산업구조와 노동환경 변화 예측 과제 및 정책 대응



3. 제도의 주요 내용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변화하는 산업 흐름의 조용한 법제도 개선 방향

- 우리만이 아니라 거대 자본의 대규모 유통시장 진입과 확대 결과는 일부 유럽연합 (EU) 국가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완화나 폐지로 나타났음. 그 결과 지난 30년 동안 대형마트 24시간 영업,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영업, 평일 연장 영업 등이 가속화된 현상과 조우했음.
- 유통 영업시간 결정은 시장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자본의 핵심적인 경영전략 중 하나였음. 게다가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서 의무휴업이 수십 년 유지됐던 것과 달리 한국 사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10년 남짓에 불과함.

- 독일은 연방의 영업시간제한법(Gesetz über der Ladenschluß)과 각 주의 영업시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점들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음. 1956년에 제정된 영업시간제한법은 상점들의 영업시간을 연방법으로 규제하기 위한 목적임.
- 독일 유통 관련 영업시간제한법 제3조에 따른 영업시간 규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시에서 20시까지 영업가능(일요일과 공휴일 휴점)하며, 12월 24일이 평일인 경우 6시에서 14시까지 영업가능하고, 빵집에 한하여 5시 30분에 영업시작 가능함.
- 독일 유통 관련 영업시간 제한 예외적 규정은 주민이 200,000 이상 거주하는 주의 정부는 주요 역(Bahnhof) 안의 상점에 한 해 평일 6시부터 22시까지 영업을 가능하도록 허가할 수 있음. 또한 주 정부는 역과 공항에 한하여 통상 영업을 금지된 20시부터 6시까지 영업을 가능하도록 허가할 수 있음(그러나 일요일과 공휴일의 휴점은 강제사항)

[표 3] 프랑스 유통 소매점 영업시간 규제 변화 흐름

법명	로와이에법	라파랭법	경제현대화법	마이에법	마크롱법
제정	1979. 12. 27	1996. 7. 5	2008. 8. 4	2009	2015.7
내용	인구 4만명 이상 : 1,000m2 인구 4만명 미만 : 1,500m2	인구 기준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300m2 이상	인구 2만명 이상 : 1,000m2 이상 인구 2만명 미만 : 300~1,000m2 이하라도 가능	식료품점 일요일(1시까지) 영업 가능 비식료품점 등 공공지구 일요일 영업 가능 예외조항	관광, 상업지구 일요일 영업과 심야 영업 허가

- 프랑스 소매점포 편의점 영업 시간 규제를 보면, 주중에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지만, 독일과 마찬가지로 모든 소매점의 일요일 영업은 노동 관련 법령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제되고 있음.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1년에 5일의 일요일에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관광지나 문화, 여가 시설의 경우는 예외로 일요일 영업에 제한이 없음.
- 프랑스 대규모 소매점포 영업 시간 규제는 로와이에법(Loi Royer, 1973년 제정), 라파랭법(Raffarin, 1996년 제정)에서 중점을 두었던 소형 유통 사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 점포 출점규제였음. 2008년 프랑스 유통산업 활성화 위해 자크 아탈리(Jacque Attali) 주장을 반영하여 2008년 경제현대화법(LME, Loi de modernisation de l'économie)을 도입하여 완화되고 있으나 우리처럼 무차별적이지는 않음.
- 각 국가별로 유통업 영업체제는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소상공점

자영업자에게는 소득과 건강·휴식에도 영향을 미침. 그럼에도 제한적이거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는 아직도 상점 영업시간 제한이 법률 속에서 유지, 운용되고 있음.

- 이들 국가 모두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과 휴식권 보장, 그리고 삶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했음. 특히 이탈리아의 법률(Legislative Decree)에서는 노동자의 노동시간 불균형 해소와 고객 안전 확보 차원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함.

[표4] EU 주요 국가 소매업 상점 영업시간 및 규제 현황 종합 요약(2018)

8개 회원국	의무휴점 규정			영업시간 규정			예외 규정			
	영업 요일	정기 휴점	특별 휴점	영업 시간	별도 시간 규정	미준수 벌칙	예외 규정 *업종	예외 규정 *지역	예외 규정 *면적/매출	휴점 예외
독일	월-토	일요일, 공휴일		06:00-20:00	가판 오전11시부터, 오후 1시(공휴일)	500€ 벌금	신문, 가판, 약국, 주유소, 여행 관련 업종 등	철도역, 공항, 정류장 등		박람회, 전시, 이벤트 등
영국	월-일		부활절, 크리스마스	10시간-18시간		80000 € 벌금	자전거, 자동차, 약국, 주유소, 여행 관련 업종 등		280㎡ 전후	유대인 상점
벨기에	월-일	일요일		5시간-21시간	야간 18시-7시	€1,250~€50,000	꽃집, 약국, 가판, 세탁, 주유소 등	철도역, 공항, 정류장, 관광지 등	야간150㎡	야간 쇼핑물
덴마크	월-토	일요일, 공휴일	크리스마스 전 일요일	06:00-17:00	첫째, 마지막 토요일	불법 취약따라	빵/낙농, 가판, 자동차, 농기계, 여행, 꽃집 등	철도, 고속도로 등	연간 총 매출 325만 유로 미만	연간 매출 140만 유로 상점
스페인	월-토	일요일			최대 90시간 초과 불가		책, 신문, 잡지, 식품, 장난감 등		500㎡미만(자율), 300㎡ 미적용	편의점, 자치지역
이탈리아	월-토	일요일	지자체 지정 날(반나절)	07:00-08:00	하루 13시간	€516~€3,098		역사중심지, 해변,		
네덜란드	월-토	일요일	일부 코문지역	06:00-20:00	18시간 초과 불가(토요일 17:00 폐점)	€4,500~€11,250	신문가판 등	기차역, 공항, 주유소, 관광 명소 등		식품 상점
포르투갈	월-일	일요일		06:00-24:00	일요일/공휴일	개인(€249~	생활 제공	기차역, 공항 등	최대250㎡	슈퍼마켓,

8개 회원국	의무휴점 규정			영업시간 규정			예외 규정				
	영업 요일	정기 휴점	특별 휴점	영업 시간	별도 시간 규정	미준수 벌칙	예외 규정 *업종	예외 규정 *지역	예외 규정 *면적/매출	휴점 예외	
					08:00-13:00	€3,740), 법인(€249 ~ €3,740)	상점, 주휴소 등				편의점

○ 물론 유럽연합(EU) 주요 나라들의 유통 소매 상점 영업시간 운영과 규제 현황을 각 나라별 차이가 있었음. 독일, 영국(잉글랜드, 웨일즈),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의 각 국가별로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확인됨.

- 유럽 주요 국가별로 보면 일주일간 영업 요일과 시간, 일요일의 영업시간 관련 적용되는 일반 규칙을 갖고 있음. 이러한 일반 규칙에 대한 주요 부문별 또는 지리적 예외는 특정 사업체가 자신의 활동 또는 지역(철도역, 공항 또는 관광 지역)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유럽 일부 지역에서 크리스마스(12/24) 쇼핑이나 판매와 관련된 일요일 폐점을 규정하고 있음.

○ 유럽연합(EU) 주요 국가의 해외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은 3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음.

- ①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스웨덴을 제외하고, 검토된 모든 국가는 특정 경제 법령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적용은 종종 지자체나 자치지역별로 분권화되어있음.
- ② 지난 20여년 사이 영업시간 제한을 규제한 법률을 완화하려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소매 상점 개점 시간은 자국 내, 타 국가 별로 크게 차이가 있음.
- ③ 영국(잉글랜드, 웨일즈), 덴마크, 스페인, 포르투갈은 중소기업보다 슈퍼마켓에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음.

□ 국회와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접근

○ 결국 정부와 국회가 규제혁신을 명목으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점 축소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아제는 노동자 보호 관점에서도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함 함. 이는 법률(입법·조례), 정책(개선계획 수립, 이행과 점검·모니터링)을 예상되는 도전과 정책

과제에 맞추어 수립해야함([그림 2] 참조)

- 그간 「유통산업발전법」은 정부정책이 대형유통기업의 확장 혹은 일부 제한에만 집중되었음. 과거 정부 법률은 대형유통기업의 확장이나 제한 사이에서 있었고, 유통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보호하려는 법률은 없었고 고민도 하지 않았음.⁹⁾ 21대 국회에서는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과 관련된 제정안이 발의된 상황임.¹⁰⁾

* 박홍근의원 대표 발의 「중소유통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중소기업들을 위한 규제와 진흥만을 분리하여 새로운 법으로 제정

* 정태호의원 대표 발의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디지털화에 뒤처진 오프라인 중소기업들을 위한 진흥법

[표5] 21대 국회 주요 유통산업발전법 법안 제출 현황(2021년 하반기 기준)

항목	주요 내용
복합쇼핑물 규제	○ 제20대 국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이 그대로 반영된 법률안의 경우(홍익표 의원안, 의안번호 2101347),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복합쇼핑물’에 대한 현행 규제의 확대 적용에 관한 것임.
영업제한 규제대상 확대	○ 심지어 그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물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에 대하여”서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법률안도 있음(이동주 의원안, 의안번호 2101076). ○ 다만, 현재까지 본 법률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복합쇼핑물 기준 도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정의 규정의 문제	○ 현행법상 유통규제의 합리화 등을 고려함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현행 유통법이 취하고 있는 유통 업체 ‘정의’에 관한 것인데, 현행 정의 규정 체계가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식자재 마트를 추가하거나(최승재 의원안, 의안번호 2105219), 아울렛 규정 등을 신설하는 동향도 볼 수 있음.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	○ 다음으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절차 등과 관련하여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 이행의 실효성 확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유사하고, 현행법상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 ○ 이에 따라, 허영 의원안(의안번호 2105772)은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고, 해당 기관이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한다거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산업부 장관이 이를 평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시 이를 개선권고, 권고대상 및 내용 등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를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화(안 제8조 제1항 및 안 제8조의2, 제8조의 3 신설)”
온라인 쇼핑	○ 한편, 현행법상 대형마트 등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영업 역시 영업제한 등 규제 대상인 점에 착안하여, 최근 유통산업구조가 급변하면서 소매시장 및 소비자 트렌드가 오프라인유통에서 온라인유통으로 급격히 넘어가고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심지어 국경의 제한조차 없는 온라인쇼핑은 이미 보편화된 쇼핑채널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쇼핑 영업까지 제한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이종배 의원안, 의안번호 2102201) ○ 이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온라인쇼핑 영업을 규제해도 그 반사이익이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다른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소매업에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의무휴업일 제한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는 법률안 제안(안 제12조의2제1항 단서).

9) 개별 산업 법령에서 고용 문제가 포함된 법률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36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제37조(생활물류 쉼터), 「공통주택관리법」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보건의료기본법」 제25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등)이 있음.

10) 제20대 국회 홍익표 의원 제안안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물에 대하여 현행 대형마트등에 대한 영업행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제도를 확대시행 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바 있음.

항목	주요 내용
근로자의 휴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들어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대형마트 등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입법 움직임도 포착 ○ 현행법상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매월 이들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명절 (당일)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근로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할 명절에도 노동을 하여야 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설날 또는 추석에 있는 달에는 명절 당일에 의무휴업일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명절과 근접한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휴업일로 지정하지 아니하도록 개정(안 제12조의2제4항 신설).

주 : 한국법제연구원 최유경 부연구위원(2021.9.3.)의 자료를 필자 [표]로 재구성.

○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통산업발전법」은 ①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②대형마트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제도, 및 ③대규모점포 개설 단계에서의 상권 영향분석 및 지역협력 의무라는 3가지 형태로 제도와 운영 해왔음.

- 이 같은 규제는 원칙적으로 ‘오프라인 대규모점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업태 등록이 대형마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했음. 예외적으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대규모점포(SSM)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는「유통산업발전법」(제5조, 제7조, 제12조)에 근거해 유통업 전반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과 삶의 균형과 건강을 위한 조치로, 대규모 점포의 영업일과 영업시간 조정(제5조, 제6조)에 관심을 두어야 함. 프랑스 국가상업위원회(CNEC) 사례처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참여 방식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음.

- 사실 역사적으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정기 의무휴점제가 포함된 법률은 2011년 10월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논의부터 시작되었음. 유통기업들의 출혈 과당경쟁으로 인한 상시적인 연장영업과 야간영업, 연중 무휴영업으로 인하여 유통산업 내 백화점, 할인점 등 대규모점포에 종사하는 유통서비스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영위할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주요 배경이었음.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2011.10)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규모점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과도한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및 휴식권을 보장하고, 에너지 과소비와 인근 주민의 생활권 침해를 방지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5조, 7조, 12조)에 근거하여, 유통업 종사자의 일과 삶의 균

형 및 건강 예방(건강권·휴식권)을 위한 필요 조치로, △‘대규모점포’ 대상 추가 및 영업 일(정기 의무휴점제)과 △영업시간 조정(연장시간 제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제한)을 관련 법률(제2장 유통산업발전계획 등, 제5조와 제6조)에 수립에 부합하게 정기 의무휴점제와 영업시간, 대상 추가 검토가 필요함.¹¹⁾

「유통산업발전법」 영업시간 제한 의무 및 주요 현행 조항
<p>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p> <p>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p> <p>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영업시간 제한</p> <p>2. 의무휴업일 지정</p> <p>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p> <p>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 첫째, 유통업 대중소 상생과 종사자 보호 및 고용과 관련하여 국회와 정부(산업자원부)에서「유통산업발전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 통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업 온-오프라인의 제도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함.

- 더불어 관계부처(공정위, 산자부, 노동부)에서 EU처럼 온라인 플랫폼노동과 오프라인 플랫폼노동과의 형평성 있는 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현재의 유통업은 온라인 유통(쿠팡, 아마존, SSG 등 마트 4사) 확산 과정에서 플랫폼노동자 및 물류운송 창고 종사자의 고용 문제가 전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 둘째, 주요 주무부처인 산자부와 공정위 그리고 노동부 등에서 정부 합동 대책이 필요함(법령 수준: 모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지침, 훈령, 가이드라인 등). 예를 들어「유통산업발전법」 정의에 ▲무점포(온라인 유통 전자상거래)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제

11) 국내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규제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역상권과의 조화 및 상생협력의 차원에서도 타당성이 높은 규제’(김윤정, 2015:9)라는 정부 산하 국책연구원의 보고서도 발간된바 있음.

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8에 종사자 고용 및 직업능력 향상 지원 조항 신설 통해 개별 법률에서 구속력 강화 방향이 필요하며,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⑤항 등에 산업조정과 고용 관련 사항 등 추가 등 검토 필요함.

[그림 3] 유통 소매업 정기 의무휴점 및 배송시간 검토 방향(안)

	현행 규칙 (before)	개정 규칙1 - 요일 (after)	개정 규칙2 - 시간 (after)
지정 시간	특별 규정 없음	명절 및 야간노동 시간 규정	온라인 배송 시간 규정
지정 요일	대형마트 주2회 그 외 규정 없음	주 1회 의무 (월 4일)	주 1회 의무 (월 4일)
추가 대상	현행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시설 포함	플랫폼운영기업 (쿠팡, 네이버 등)

(1)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의 지정(일요일, 명절, 공휴일 휴업)

1.1 평일과 토요일의 경우 백화점(**시에서 ***시까지), 대형마트(**시에서 **시까지)

1.2 쇼핑몰이나 기타 다중이용시설 내 대형 백화점, 마트 추가 포함

1.3 매월 주 1회 의무휴점 조항 추가(대형마트: 2회 → 4회, 백화점 동일 적용 검토)

(2) 예외적인 영업, 연장영업시간, 공휴일 영업 등 삭제

(3) 농수산물 매출 51% 초과 대규모점포 등 영업시간제한 예외 규정 삭제

[*유통산업발전법 제4조(적용 배제) 삭제]

(4) 기타 예외 조항 의무휴점, 시간 조항 추가(설, 추석 및 기타 지정 요일)

4.1 명절 당일 및 명절 연휴기간 의무휴업 및 단축

4.2 밖의 공휴일 등 특별 지정 요일 확대(주 1회)

4.3 심야시간 운송 시간 등 조정 및 규정

(5) 온라인 쇼핑 배송 및 플랫폼 운영업체의 운영 요일, 시간 등 적용 검토

5.1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 통한 배송 운영 시간대 지정

5.2 기존 대형쇼핑 업체의 온라인 쇼핑 통한 배송 운영 시간대 지정

[별첨자료] 독일 주별 키오스크 영업시간과 관련 법제

독일 16개 지역(주)	주중(월 - 금)	토요일	일요일
바덴뷔템부르크 ¹²⁾	0-24	0-24	휴무
바이에른 ¹³⁾	6-20	6-20	휴무
베를린 ¹⁴⁾	0-24	0-24	휴무
브란덴부르크 ¹⁵⁾	0-24	0-24	휴무
브레멘 ¹⁶⁾	0-24	0-24	휴무
함부르크 ¹⁷⁾	0-24	0-24	휴무
헤센 ¹⁸⁾	0-24	0-24	휴무
메클렌부르크 ¹⁹⁾	0-24	0-22	휴무
니더작센 ²⁰⁾	0-24	0-24	휴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²¹⁾	0-24	0-22	휴무
라인란트-팔츠 ²²⁾	6-22	6-22	휴무
잘란트 ²³⁾	6-20	6-20	휴무
작센 ²⁴⁾	6-22	6-22	휴무
작센-안할트 ²⁵⁾	0-24	0-20	휴무
슐레스비히-홀슈타인 ²⁶⁾	0-24	0-24	휴무
튀링겐 ²⁷⁾	0-24	0-20	휴무

12) Gesetz über die Ladenöffnung in Baden-Württemberg (LadÖG)

13) 바이에른 주는 별도의 규정 없이 연방법을 따름; Gesetz über den Ladenschluß (LadSchlG)

14) Berliner Ladenöffnungsgesetz (BerLadÖffG)

15) Brandenburgisches Ladenöffnungsgesetz (BbgLÖG)

16) Bremisches Ladenschlussgesetz

17) Hamburgisches Gesetz zur Regelung der Ladenöffnungszeiten (Ladenöffnungsgesetz)

18) Hessisches Ladenöffnungsgesetz (HLÖG)

19) Gesetz über die Ladenöffnungszeiten für das Land Mecklenburg-Vorpommern
(Ladenöffnungsgesetz - LöffG M-V)

20) Niedersächsisches Gesetz über Ladenöffnungs- und Verkaufszeiten (NLöffVZG)

21) Gesetz zur Regelung der Ladenöffnungszeiten (Ladenöffnungsgesetz - LÖG NRW)

22) Ladenöffnungsgesetz Rheinland-Pfalz (LadöffnG)

23) Gesetz zur Regelung der Ladenöffnungszeiten
(Ladenöffnungsgesetz - LÖG Saarland)

24) Gesetz über die Ladenöffnungszeiten im Freistaat Sachsen
(Sächsisches Ladenöffnungsgesetz - SächsLadÖffG)

25) Gesetz über die Ladenöffnungszeiten im Land Sachsen-Anhalt
(Ladenöffnungszeitengesetz Sachsen-Anhalt - LöffZeitG LSA)

26) Gesetz über die Ladenöffnungszeiten (Ladenöffnungszeitengesetz – LöffZG)

27) Thüringer Ladenöffnungsgesetz (ThürLadÖffG)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과 노동자 건강

- 이해은 직업환경의학전문의 / 한림대의대 사회의학교실 부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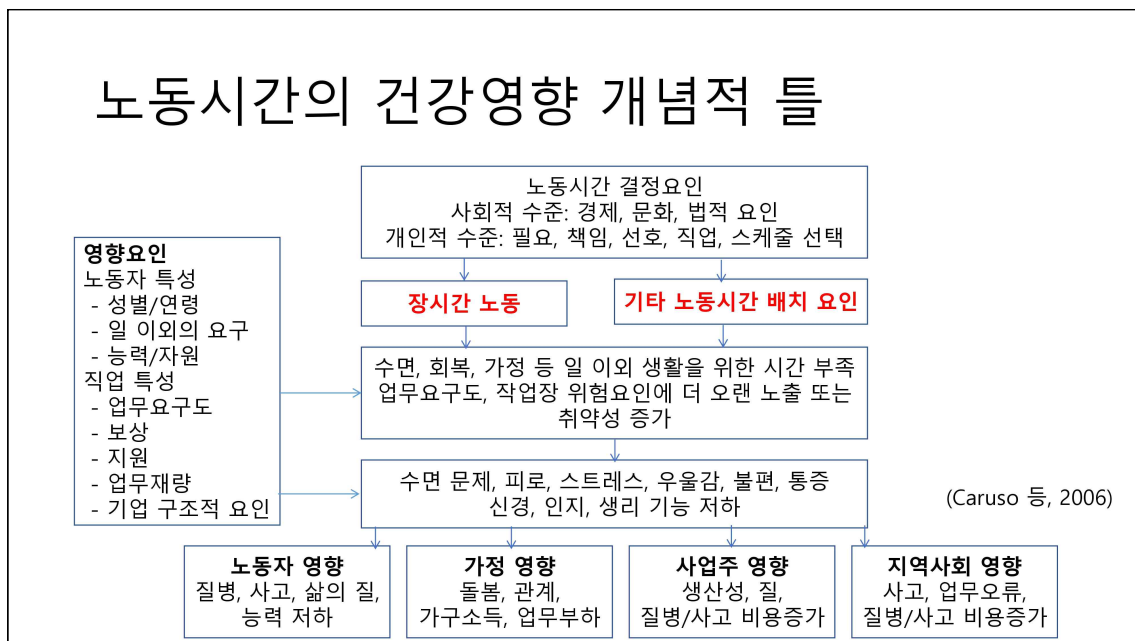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과 노동자 건강

이해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부교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운영위원

건강영향 연구를 위한 노동시간의 측면

- 노동시간의 길이
 - 장시간 노동, 초단시간 노동 등
 -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짐
- 노동시간의 밀도
 - 노동강도, 물량
 -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
- 노동시간의 배치
 - 교대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 주로 야간근무/교대근무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짐

노동시간의 건강영향 개념적 틀



기존 연구결과 검토

해외 연구 사례 (1)

- Wirtz et al. Working on Sundays—effects on safety, health, and work-life balance. *Chronobiol Int.* 2011 May;28(4):361-70.
- 유럽 31개국 노동자 23,934명 대상 연구
- 주요 결과
 - 월 1회 이상 일요일 근무를 할 경우 일요일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 1개 이상 건강문제 1.17배 높음
 - 일-생활 균형 저하 1.15배 높음
 - 작업관련 사고 1.34배 높음

해외 연구사례 (2)

- Takada et al. Associations between lifestyle factors, working environment,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a large-scale study in Japan. *Ind Health*. 2009 Dec;47(6):649-55.
- 일본 11개 도시 4,118명 노동자 대상
- 주요 결과
 - 휴일근무 월 5일 이상 여성에서 휴일근무를 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
 - 우울증상이 33.3배 높았음

국내 연구 사례

- Lee et al. Weekend work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employees. *Chronobiol Int*. 2015 Mar;32(2):262-9.
- 연구 목적
 - 주당 노동시간을 보정하고 주말 노동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함
- 연구 방법
 - 2011년 취업자 근로환경조사 자료 이용
 - 50032명의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29711명 대상
 - 주말노동: 지난 한달간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
 - 우울증상: 세계보건기구의 웰빙지수 설문으로 측정
 - 보정한 요인: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소득수준, 주당 노동시간, 정규직/비정규직, 직업군, 회사규모, 교대근무 유무

• 주요 연구결과

성별	주말노동 여부	우울증상에 대한 오즈비* (95% 신뢰구간)
남성	주말노동 없음	1 (기준 집단)
	주말노동 1-4일	1.36 (1.18-1.57)
	주말노동 5일 이상	1.45 (1.19-1.78)
여성	주말노동 없음	1 (기준 집단)
	주말노동 1-4일	1.32 (1.12-1.58)
	주말노동 5일 이상	1.36 (1.07-1.73)

*연령, 소득, 정규직/비정규직, 직업, 교대제, 주당 노동시간 보정

결론: 주당 노동시간을 보정하여도 주말노동을 하지 않는 노동자에 비해 주말노동을 하면 우울증상 위험이 높아지며 주말노동 일수가 높을수록 위험이 더 높은 양-반응 관계를 보임

주말노동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높은 노동강도
 - 작업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형마트의 경우 일요일 노동은 평일보다 더 노동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 높은 노동강도는 피로와 수면 문제, 근골격계 증상 등 건강문제와 관련성이 알려져 있다.
- 일-삶 균형의 저해
 - 전체적인 사회의 사이클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휴식과 재충전, 여가의 시간을 갖는다
 - 가족과 친구 등 관계 형성에 중요한 사람들과 사이클이 맞지 않아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우울증상을 가져올 수 있다

마트 노동자 설문조사 분석결과

유통물류서비스업 야간노동 실태와 노동자 건강영향 연구 (2022)

분석 대상

- 마트산업노동조합 서울, 경기 지역 조합원
- 온라인 설문조사 (2022. 6. 22 - 7.9)
- 응답 완료 318명

	구분	인원 수	%
연령	30대 이하	3	0.94
	40대	28	8.81
	50대	259	81.45
	60대	28	8.81
성별	남자	5	1.57
	여자	312	98.11
	기타	1	0.31
지역	서울	161	50.63
	경기	157	49.37
고용형태	정규직	87	27.36
	무기계약직(전문직)	230	72.33
	계약직(1년 이내)	1	0.31
	특수고용직	0	0
	기타	0	0
근무기간	1년 이내	0	0
	1-3년	0	0
	3-5년	3	0.94
	5-10년	123	38.68
	10-20년	172	54.09
월소득 (만원)	20년 이상	20	6.29
	부업 없을 경우	177.9±22.0	
	부업 있을 경우 (일이 있을 때만 일함)	200±30	

주말 노동 현황

일요일 근무			2020 근로환경 조사	토요일 근무			2020 근로환경 조사
	인원 수	%			인원 수	%	
0회	8	2.6	79.7	0회	8	2.6	57.1
1회	16	5.1	3.4	1회	16	5.1	4.5
2회	172	55.3	8.2	2회	37	11.8	12.8
3회	43	13.8	1.4	3회	71	22.7	2.2
4회	53	17.0	7.2	4회	162	51.8	23.1
5회	19	6.1	0.2	5회	19	6.1	0.3
계	311	100	100	계	313	100	100

노동강도

	일요일근무 2회 이하		일요일 근무 2회 초과		전체		2020 근로환경조사
	명	%	명	%	명	%	%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함							
근무시간 대부분~내내	56	28.6	39	33.9	95	29.9	10.4
엄격한 마감시간에 맞춰 일함							
근무시간 대부분~내내	93	47.5	61	53.0	154	48.4	12.2
귀하의 업무시 일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까?							
별로/전혀 그렇지 않다	66	33.7	32	27.8	99	31.1	12.5
전체	196		115		318		

일-가정 균형

	일요일근무 2회 이하		일요일 근무 2회 초과		전체		2020 근로환경조사 %
	명	%	명	%	명	%	
귀하의 근무시간은 가정생활이나 직장 외의 사회생활을 하기에 적당합니까?							
(전혀) 적당하지 않다	96	49.0	60	52.2	158	49.7	18.4
퇴근 후 너무 피곤하여 해야 할 집안일을 할 수 없다							
항상/대부분 그렇다	100	51.0	60	52.2	163	51.3	8.3
일로 인해 가족에게 당신이 원하는 만큼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							
항상/대부분 그렇다	147	75.0	85	73.9	236	74.2	7.6
전체	196		115		318		

우울증상

- 평가 항목: 지난 2주동안
 -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 하던 일에 흥미가 없어지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 없음/7일 이내/7일 이상/거의 매일 ->3점 이상일 경우 우울증 의심

		우울증상		
		없음	있음	합계
일요일 근무 2회 이하	명	149	47	196
	%	76.0	24.0	
일요일 근무 2회 초과	명	75	40	115
	%	65.2	34.8	
전체	명	231	87	318
	%	72.6	27.4	

미충족 의료

- 최근 1년간 병의원 검사/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미충족 의료			합계
		없음	있음	해당없음	
일요일 근무 2회 이하	명	130	56	10	196
	%	66.3	28.6	5.1	
일요일 근무 2회 초과	명	75	35	5	115
	%	65.2	30.4	4.4	
전체	명	210	93	15	318
	%	66.0	29.3	4.7	

분석 결과 요약

- 마트 노동자의 주말 근무는 우리나라 취업자에 비해 매우 높다
- 일요일 근무 월 2회 초과인 노동자의 경우
 - 노동강도가 높았고
 - 일-가정 균형에 저해가 되었고
 - 우울증상 경험률이 높았으며
 - 미충족 의료 경험 또한 높았다
- 제한점
 - 서울/경기 지역에 국한된 적은 표본수
- 의의
 - 노동조건이 유사한 같은 마트 노동자들 간의 내부 비교 결과에서 일요일 근무에 따른 차이를 보임 → 일요일 근무 횟수의 건강 영향 시사

결론

- 기존의 연구 및 설문조사 분석 결과 일요일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 특히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침
- 주된 매개 기전은 높은 노동강도 및 일-삶 불균형으로 설명됨
- 좋은 노동시간 (Decent working time)의 조건 (국제노동기구)
 - 노동시간의 배치는 1) 건강해야 하고, 2) 가족 친화적이어야 하며, 3) 성별평등을 증진시켜야 하고, 4)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5) 노동자가 스스로의 노동시간에 대해 선택하고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
- 노동자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비표준적 노동시간 (평일의 정상적 낮시간의 근무가 아닌 경우)은 최소화 하여야 함

토론문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넘어 모든 유통노동자의 일요일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하자

-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

[두번째 발제에 대한 의견]

- 유통물류서비스업 야간노동 실태와 노동자 건강영향 연구를 통해 밝혀진 '일요일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경우 노동강도가 높고, 일-가정 균형 저해, 우울증상 경험률 높으며 미충족 의료경험 또한 높았다'는 결과에 대해 주목하고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 노동운동이 추구하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이 단순히 노동시간과 강도를 줄이는 것에서 한단계 발전하여 전체 사회의 사이클에 맞는 휴식이 보장되는 것이 노동자의 삶-일 균형과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투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발제인 대형마트 정기 의무휴업제도 한계와 과제 검토에 대한 의견]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내용 중 공휴일 휴업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유통산업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비중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유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휴식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 등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나열하려고 합니다.

1. 일요일 아닌 다른 요일로의 의무휴업일 변경 사례

- 모든 사례의 핵심 문제는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생발전협의회는 이해당사자들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만 가장 핵심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의 참여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생협의회에 노동조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의무휴업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생협의회 구성에 노동조합(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법 시행 초기부터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의무휴업을 변경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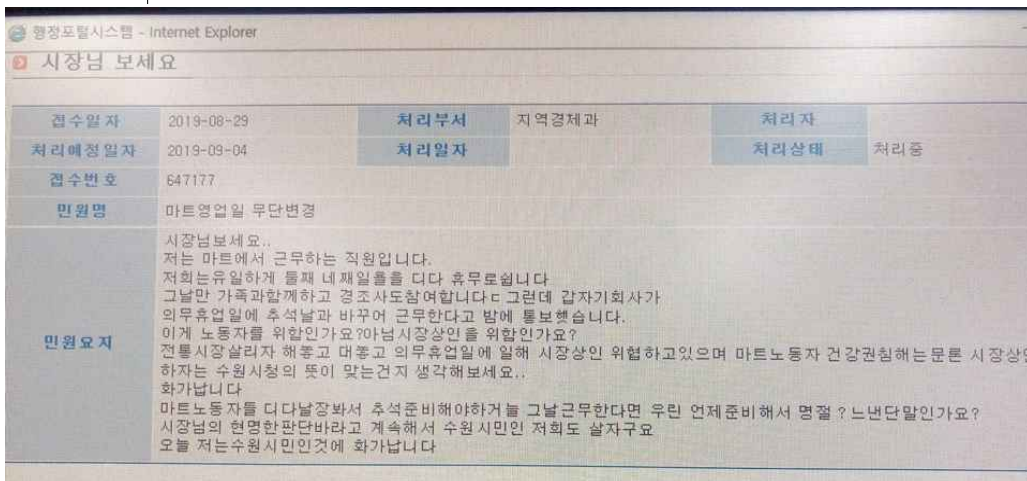
: 경북 구미·안동, 경기 양주·남양주 지역 등

2) 일요일에서 평일로 의무휴업 변경을 시도한 사례

<p>세종시</p>	<p>2017년 9월 19일 세종시의 의무휴업일 변경 행정예고 확인 예고 기한은 2017년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22일간 내용은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겠다는 것 세종시청에 일방적인 변경에 대해 항의하며 어떤 절차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였으나,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는 답변만 함 이에 일인시위를 시작으로 항의 행동 돌입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 마트노동자와 주변 전통시장상인과 중소상가들과 함께 의무휴업 변경 반대 서명운동 진행. 2천명 서명 전달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반대 의사 표명으로 세종시는 결국 현행유지 결정</p>
	<p>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8 - 573호</p> <p>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변경에 관한 행정예고 결과공표</p> <p>「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변경에 관해 실시했던 행정예고에 대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p> <p>2018. 3. 16.</p> <p>세종특별자치시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예고 사항 :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변경 (매월 2.4번째 수요일) 행정예고 기간 : 2017. 9. 22. ~ 10. 13.(22일간) 행정예고 검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변경에 관한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현행(매월 2.4번째 일요일)대로 실시하고자 함 <p>※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청 경제정책과 생활경제담당 (☎ 044-300-40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3) 일요일에서 명절 당일로 의무휴업을 변경한 사례 : 매출이 적고 근무 인원이 적은 명절 당일로 의무휴업을 변경하는 품수

수원시 2019년 8월 17일 대형마트3사가 주축이 된 체인스토어협회가 전국 189개 시, 군, 자치구에 의무휴업일인 8일의 휴업을 추석 당일인 13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
수원시는 지역내 마트에 일요일 정기휴무일을 추석연휴를 앞두고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 지역내 마트에 '9/8휴무변경 및 추석당일 휴무'라는 회사 공지가 발표 됨
공지를 통보받은 마트노동자들은 8월 29일 수원시청 항의방문 진행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인 변경에 대해 항의 함 1박2일간의 투쟁을 통해 수원시는 변경 계획 철회를 밝힘



서울 강동구	<p>서울에서 유일하게 일요일과 명절당일 의무휴업을 변경했던 지역구</p> <p>2021년 1월 강동구청에 변경 반대와 항의하는 의견 전달함</p> <p>1월 21일 중소기업단체와 함께 강동구청 앞 규탄 기자회견 진행</p> <p>심지어 강동구청은 시행규칙을 통해 대형마트의 의견만으로도 의무휴업을 변경할수 있도록 되어 있었음</p> <p>당사자들의 항의로 결국 1월 22일 강동구청은 의무휴업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 밝힘</p> <p>이후 21년 7월 20일 시행규칙 개정함</p>
-----------	--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를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p>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p> <p>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다만, 설 및 추석 명절의 경우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하고 명절 후 첫 의무휴업일은 지정 해제할 수 있다.</p> <p>② 대규모점포등에서 제1항제2호 단서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절 30일 전까지 전체 대규모점포등이 동의하여 의무휴업일 변경요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 ⑤ (생략)</p>	<p>제2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 ----- ----- ----- -----</p> <p>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한다.</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2. 온라인유통산업 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 침해 사례

- 2020년 11월 15일 배송 중이던 롯데마트 배송노동자 사망. 평소 술, 담배조차 하지 않고 지병도 없이 건강했음. 최근 고인은 늘어난 물량으로 인해 계속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함. 근무 중 사망하였지만, 개인사업자라며 롯데마트와 운송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산재신청 역시 어려운 상황.

- 2021년 4월 2일 새벽 김포네오몰류센터에서 새벽 배송일을 하던 배송노동자 사망. 새벽 6시까지 배송을 마쳐야 하는 심야노동을 함. SSG 김포네오몰류센터는 추가적으로 아침 9시까지 배송을 받을 수 있는 굿모닝배송 시행. 이럴 경우 배송노동자들은 낮밤이 바뀐 채로 하루 12시간을 넘게 일해야 함
- 2021년 5월 25일 과로로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진 홉플러스 배송노동자 사망. 48세 전년도 건강검진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건강한 상태. 최근 휴무제와 배송권역이 변경되고 난 후 힘들다는 말을 가족과 동료들에게 자주 함.
- 2022년 6월 22일 쓱닷컴과마켓컬리에서 일하던 배송노동자가 자신의 배송 차량 안에서 사망.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쓱닷컴 배송, 새벽 1시부터 오전 7시까지 마켓컬리에서 새벽배송 업무 진행. 제대로 된 휴게공간도 없고 적재장이 야외에 있어 악천후엔 눈비를 맞으며 일해야 함.
- 2022년 7월 5일 홉플러스 풀필먼트센터에서 근무하던 이커머스 노동자 퇴근후 뇌출혈로 사망. 평소 새벽 5시 출근, 주문량 증가로 최근 12시간의 장시간 노동 진행
- 2022년 7월 26일 갑작스런 심정지로 홉플러스 배송노동자 사망. 연이은 배송노동자의 사망에도 대형마트도 운송사도 정부도 어떠한 대책 수립하지 않고, 제대로된 보상도 하지 않음
- 2022년 8월 3일 매장에서 피킹업무를 하는 홉플러스 이커머스 노동자가 근무 중 넘어짐 사고 이후 사망함. 홉플러스 이커머스 노동자의 작업 공간은 좁고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열악한 공간임.

온라인과 디지털로 가는 것이 산업 변화의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노동권이 침해되고 착취당하는 구조가 된다면 이는 공정한 산업전환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롯데와 신세계 등 대기업 유통자본은 쿠팡과 같은 온라인유통기업과 비교하여 오프라인 유통기업이 차별받고 있다고 이는 불공정하다며, 의무휴업 폐지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롯데와 신세계 모두 오프라인 유통과 온라인 유통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별받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무한 경쟁을 통한 유통대기업의 독식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제대로 된 임금이나 노동강도, 삶-일 균형 따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배송 속도 경쟁으로 배송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유통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온라인유통산업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의무휴업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영업시간을 단축하여 야간노동을 없애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단축 확대로 모든 유통노동자들의 일요일을 쟁취하는 투쟁을 할 것입니다.

자본은 노동자들을 경쟁사라며 분열시키려고 하고 중소기업들과 노동자들을 구분하려 하지만, 산별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는 우리는 이미 모든 마트노동자와 배송노동자 그리고 온라인산업을 비롯한 전체 유통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이 우리 노동자와 중소기업인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투쟁을 진행 및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	내용	방식
사용자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사간 산별협약 체결 - 의무휴업 적용 사업장 확대 - 일요일 의무휴업 시행 - 노동시간 단축(22시 폐점)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마트노동자 설문조사 진행, 산별협약요구안 확정 - 11월 산별교섭 제안 - 11.12 마트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투쟁 진행
지방 자치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인 지역 대상으로 진행 - 지자체 조례 개정으로 일요일 의무휴업 쟁취 - 상생발전협의회에 이해당사자로서 노동조합 참여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역별 순차적으로 진행 - 지역내 노동자, 중소기업들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투쟁
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요구 - 이케아,하이마트와 같은 전문점과 백화점,면세점,복합쇼핑몰에도 적용 - 특히 심야노동에 내몰린 온라인유통산업에도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확대 -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예외 규정 삭제 - 상생발전협의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연맹을 중심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투쟁 진행 - 발의된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투쟁 진행
국가 인권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로 인한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자기결정권 박탈은 기본권 침해이며,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피해구제 조치 요구 - 근로기준법 70조 1항의 여성노동자의 야간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밤 10시 폐점)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5월 10일 인권위 진정 접수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유통산업 특히 온라인 유통산업의 24시간 영업을 중단하여 전기 사용을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 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밤 10시 폐점)과 심야 노동 중단으로 에너지 절감 - 산자부 '탄소중립 이행 지원사업', 환경부 '탈플라스틱 사업' 추진 중. 유통산업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건물의 냉·난방, 조명 등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기여 	
--	--	--

윤석열정부가 의무휴업 폐지 시도를 하였지만, 우리 국민들의 3명 중 2명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에 마음 아파하며 '천천히 와도 괜찮아'를 이야기 했던 국민들입니다. 노동자와 고객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윤석열정부입니다.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이제는 의무휴업 적용 확대를 더 큰 목소리로 외쳐봅시다.

의무휴업 제도에서 배제된 백화점 면세점 판매서비스 노동자

-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위원장 -

“백화점 여성노동자에게도 가정이 있습니다.”

“영업시간제한으로 여성노동자의 출산, 양육권을 지켜주세요.”

“명절에는 가족과 함께 고향에 가고 싶다. 명절 휴무 보장하라.”

“노동자 건강권 무시하는 연장영업 반대한다.”

“유통노동자의 염원이다. 영업시간 단축하고 주1회 정기 휴점제 시행하라!”





-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 백화점 노동자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4년간 전국의 백화점 앞에서 매주 마다 피켓 선전전과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며 노동자의 건강권이 얼마나 기본적인 가치인지를 알려냄. 2013년 대형마트의 월2회 의무휴업이 생겨났지만 백화점면세점노동자의 휴식권과 일 가정양립과 삶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 2021년 서비스연맹에서 백화점노동자 447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9~10시간이라고 응답한 노동자가 34.9%(최다 응답). 주중 41~52시간 일

하는 노동자는 34%, 53~60시간 일하는 노동자도 25.3%. 즉, 3명 중 1명이 야근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고, 4명중 1명은 10~12시간씩을 일하고 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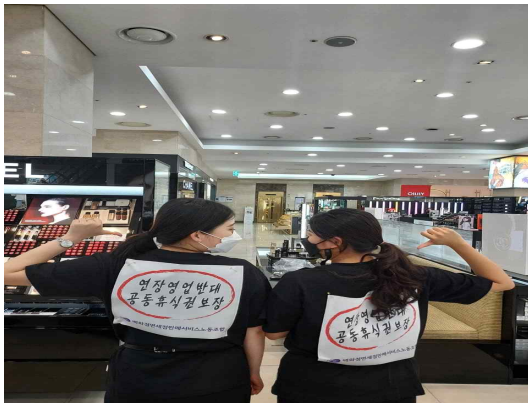
-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백화점-입점업체-노동조합 3자가 참여하는 연장영업의 일시와 시간 등을 결정하는 합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 함.
-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2021년 추석 명절 총파업을 하기로 결정해 협의 없이 진행되는 연장영업을 거부하고 추석연휴 중 이틀 전면파업을 진행 함.

쟁의지침

- 1) 로레알, 샤넬, 시세이도 지부 전 조합원은 협의 없이 진행되는 연장영업을 거부하고 9월 16일~22일 정시퇴근한다.
- 2) 로레알, 샤넬, 시세이도 지부 전 조합원은 추석연휴 중 전면파업을 진행한다.

일방적 연장영업 결정! 백화점은 노동자와 협이하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추석명절에 파업하니 처음으로 동료들이 다함께 쉴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남들 다 쉬는 명절연휴에 우리도 가족들과 맘편히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 사례

“최대한 쉬는 날 없이 매장을 열려는 유통기업들의 욕심은, 쉬는 날조차 온전히 쉴 수 없게 합니다. 노동자들은 휴무일이 되면 쉬면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언제 매장에서 전화가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매한 물건에 관한 문의사항이 온다거나, 담당 VIP 고객이 휴무일에 찾아온다거나, A/S 요청이 있다거나 등으로 매장에서 오는 연락을 놓치지 않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마음을 졸이며 쉬어도 선거 같지 않은 휴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동자 대부분이 여성이고 기혼여성도 많다 보니 음식을 한다든지 명절 준비로 쉬어야 하는데 근무 인원이 한정적이다 보니 순번을 정하거나 하는데 아무래도 미혼여성들은 기혼여성인 선배들에게 양보하다보니 몇 년 만에 명절에 참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방이 고향인 직원들은 정말 몇 년 만에 명절에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평일에 미리 갔다 온다든지 했어요. 명절날 가족끼리 여행을 가거나 특별한 행사를 마련하기도 하는데 항상 빠지거나 저 때문에 다른 날로 어렵게 잡거나 했어요. 항상 저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원하는 날짜에 못가고 양보해요. 면세점에서 일하다 보니 명절날 출근해서 여행가는 가족단체들을 보면 항상 부러웠습니다.”

“백화점 근무를 오래하면서 결혼도 늦어지고 난임으로 힘든 과정을 거치고 주변 조력 없이 아이한명 키우는 워킹 맘입니다. 백화점에서 일을 하면서 육아를 병행하길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화점 영업시간이 길기 때문에 주52시간을 맞추려면 영업시간 앞뒤 1시간, 30분을 직원들이 돌아가며 일찍 오고 늦게 퇴근합니다. 그 시간이 매월 일정하지 않습니다. 영업운영, 매장상황에 따라 백화점면세점 근무자들은 항상 쉬는 휴일이 매월 바뀝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갑자기 쉬어야하는 날이 있더라도 일하는 다른 직원이 자기 휴일에 나와 줘야 쉴 수 있기 때문에 모두 힘들어집니다. 고정된 휴일이 없다 보니 고정된 스케줄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아이의 어린이집 등하원시간도 매번 바뀝니다. 또한 고객응대 및 여러 상황으로 퇴근이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경우에는 아이가 혼자 있거나 선생님들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발생되어 보호자로서 심리적 긴장감이 항상 있습니다. 주말마다 쉴 수도 없기 때문에 주말에 일하게 될 때는 가족들에게 도움 요청하거나 또는 돌봄 신청을 해야 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여의치 않습니다. 명절휴일도 제대로 쉴 수 없기 때문에 며느리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소외감과 함께하지 못한 부담감도 많습니다.

의무휴업이 확대되면 고정된 휴일이 있고 모두가 같이 쉬기 때문에 업무에서 해방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영업시간이 단축된다면 교대근무 및 육아 맘의 고충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어느 노동자에게나 일터 밖에 실제 삶이 있습니다. 유통노동자에게도 ‘판매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유통노동자를 단지 물건파는 기계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 본다면 그 삶도 지켜줘야 합니다. 백화점면세점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가정과 삶이 있습니다. 유통노동자에게 판매하는 삶 바깥에서 온전히 쉴 권리가 필요합니다.

백화점·면세점·복합쇼핑몰 영업시간

▪ 백화점

	평일영업시간	(금토일)주말 & 시즌 연장 영업시간	정기 휴점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 전점	10:30~20:00	10:30~20:30	월1회, 월요일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11:00~21:00	11:00~21:30	월1회, 월요일

▪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정기 휴점
IFC mall	10:00~22:00	없음. 연중무휴
코엑스 파르나스 mall	10:30~22:00	
신세계 파미에	10:30~22:00	
스타필드 고양	10:00~22:00	

▪ 면세점

	영업시간	정기 휴점
공항점 (김포/인천/김해/제주)	06:00~21:30	없음. 연중무휴
 시내점 롯데호텔 롯데월드 신라 롯데부산 신라제주, 롯데제주	09:30~21:00 09:00~20:30 09:00~20:30 09:00~20:30 09:00~19:00	없음. 연중무휴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을 찬성하는 이유

- 김복철 재벌복합쇼핑몰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사단법인 한국패션리폼중앙회 회장 -

1. 현황 및 문제점

대규모 유통점포 별 수수료 및 휴무 현황

유통점포 명	유통점 수수료	브랜드본사 공급자	임대점포 인 소상공인	제조업 소상공인	수선실 임대 수수료	휴무
신세계백화점 (프)아울렛	30~35% 16~25%	39~51% 재고부담 임차료 관리비	14~20% 인건비 (4~5명)	4~6%	300~500	없음
롯데백화점 (프)아울렛	30~40% 16~25%				400~600	
현대백화점 (프)아울렛	30~35% 16~25%				300~600	
갤러리아 백화점	28~35%				400~600	
					200~300	

애경백화점	28~35%				150~250	
엔씨백화점	28~35%				150~250	
뉴코아아울렛	16~22%				150~250	
2001아울렛					150~200	
모다아울렛	10~22%				100~150	
세이브존	16~25%				300~600	

※브랜드 본사와 입점업체 사이의 수수료 계약은 브랜드 별로 상이. 뚜렷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 정기 의무휴점제(이하 '의무휴업')는 골목상권 보호와 종사자 건강권 및 휴식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효용이 이미 인정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발제자께서 지적하셨듯,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만 법률을 적용받고 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등은 제외되어 있다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한 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입점업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벌 유통 대기업들의 치열한 상권경쟁으로 인하여 백화점과 아울렛 등은 정규 휴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IMF 전까지만 해도 백화점들은 주1회 정기 휴점이 존재했으나, 그마저도 IMF 이후 사라졌습니다. 쉬는 날이 존재하지 않으니 대규모 복합쇼핑몰은 휴무일이 없이, 365일 운영됩니다. 입점업체들 또한 단 하루도 쉴 수 없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물론이고, 민족의 대명절인 설과 추석에도 일을 해야 합니다.

이번 추석에도 저와, 함께 입점해 있는 동료들은 연휴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장에 나와 일해야만 했습니다. 명절에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언제인지, 친척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제사를 올린 것이 언제인지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가족들과 봄 꽃, 가을 단풍 구경 한 번 가지 못했습니다. 가족 앨범 속에는 우리 가족 전부가 찍혀 있는 여행 사진이 한 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은 어떻겠습니까? 본사는 일방적으로 영업시간 연장을 결정해 통보합니다. 언제 연장 영업이 될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으니, 저녁이 있는 삶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퇴근 이후의 삶이라도 누리하고자 늦은 약속을 잡아도, 영업 시간이 갑자기 늘어나 가지

못하게 되었다며 사과하는 전화를 돌려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된 지 오래다 보니, 이제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한 대규모 복합쇼핑몰에서 일하는 입점업체와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의 삶이란 이토록 참혹한 것입니다.

이들이 입점업체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행법 상으로는 이를 무시해도 문제 될 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쉬는 날을 없애면서까지 수익을 극대화 하겠다는 냉혹한 자본주의 논리 하에 입점업체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의무휴업이 폐지된다면 이 고통스러운 삶은 유통업 종사자 모두에게 확대될 것입니다. 현행 유지 수준이라면,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계속해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의무휴업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입점업체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2. 개선방안

대규모 복합쇼핑몰 입점업체는 자신의 매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이자,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는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 사각지대에서 똑같이 고통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건강권 및 휴식권 보호’에 집중되어 있는 패러다임을 ‘노동자와 입점업체의 건강권 및 휴식권 보호’로 확대해 범위를 넓히고, 적극 연대하여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제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집단들을 포함해 개정해야 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전문점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

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준대규모점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와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상품공급점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개선방안은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밖에도 유사한 개정안이 2020년 이미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매년 개정이 좌절된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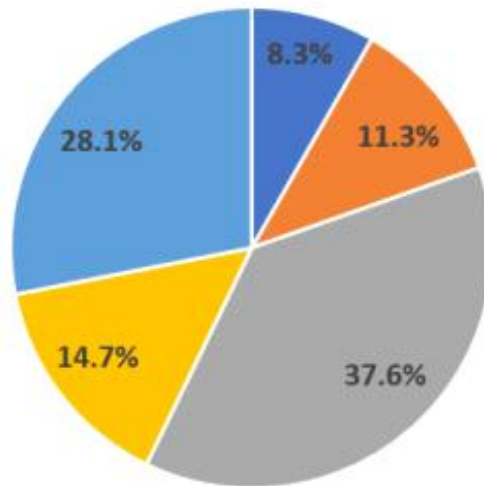
개선방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의무휴업 확대로 규제 사각지대 해소해야

-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

1. 의무휴업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효과

[그림]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일 때 이용하는 곳은



■ 전통시장 ■ 편의점 ■ 슈퍼마켓 ■ 전자상거래 ■ 대형마트

[출처 : 전경련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2021.01)]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하겠다는 소비자 응답률은 8.3%를 기록했으나, 전통시장을 비롯해 편의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을 이용하겠다는 응답률은 57.2%에 달함
 - 슈퍼마켓 37.6%, 편의점 11.3%, 전통시장 8.3%(이상 57.2%), 대형마트 28.1%, 전

자상거래 14.7%

- 도시경영연구실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중소서비스 업체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 따르면, 의무휴업 규제는 주변 상권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형마트와 주변 사업체간 경쟁관계가 뚜렷한 업종(의류·음식점·제과제빵·편의점·슈퍼마켓 등)을 선정, 국내 주요 신용카드사 매출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중소서비스업체 매출은 의무휴업일의 경우 정상영업일 보다 전체적으로 6.1% 높게 나타남. 업종별로는 슈퍼마켓 17.0%, 제과제빵 10.8% 증가.
 - 특히 대형마트와 인접한 사업체일 수록 효과가 높게 나타남. 슈퍼마켓의 경우 0.5km 23.4%, 0.5~1km 12.8%, 1km~2km 이내 17.6%, 2km~3km 이내 14.5% 매출 증가효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4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SSM 정상영업일과 비교하여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매출액이 10.4% 증가하였으며, 고객수도 11.4% 증가
 - 소상공인 점포 중 61.0%는 의무휴업일제도가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대형마트·SSM 이용 고객의 45.5%는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대체 이용한다고 응답

- 특히, 최근 한 언론사의 추석민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2명은 의무휴업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
 - 의무휴업제도를 유지해야 한다(63.7%), 폐지해야 한다(33.4%), 잘 모름(2.9%)

2. 의무휴업 확대의 필요성

-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 과제로 의무휴업 폐지를 선정한 것은, 오히려 의무휴업 규제의 효과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국민제안’ 형식의 인기 투표로 의무휴업 폐지를 거론하기 시작, 8월 국무조정실이 규제심판회의 첫 안건으로 선정하는 등 의무휴업 폐지를 추진해 왔으나, 반발이 심각해지자 의무휴업 폐지를 사실상 보류함.
 - 이제 ‘의무휴업 폐지 저지’의 ‘현행 유지’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 ‘의무휴업 확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

○ '규제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 심각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상 백화점·아울렛 등의 복합쇼핑몰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음. 대규모 복합쇼핑몰 역시 골목상권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함. 그러나 이러한 사각지대의 존재로 인해 대기업들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대규모 복합쇼핑몰 출점에 경쟁적으로 뛰어 들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골목상권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 또한, 이곳에 근무하는 노동자들과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사각지대는 이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의무휴업 확대는 곧 '규제 사각지대'의 해소

- 의무휴업을 확대하는 것은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동시에, 소상공인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방안
- 많은 자영업 단체들과 노동조합이 힘을 모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오랜 세월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
- '의무휴업 확대'를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촉구 운동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연대를 통해 더욱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

Lined area for text entry, consisting of numerous horizontal dotted lines.

